

2026년도 하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노무사 및 특수취업지원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하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사 및 특수취업지원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처 (부서)	채용분야	채용 인원	주요 업무 내용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노무사 (일반임기제 6급 상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직원 노동 사건 처리■ 교육공무직원 소송 수행■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노동법령 및 취업규칙 해석, 질의회신■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 등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특수 취업지원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전반■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운영(희망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일자리)■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직무지도 및 취업 관리(취업현황 등)■ 현장실습 우수기업 발굴·실사 및 관리■ 공공기관·우수기업 현장실습·취업 연계 업무 협약 및 채용정보 관리■ 장애학생 직업평가 및 상담■ 기타 취업지원 관련 업무 지원

-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사업계속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결격사유(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자격요건 (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자격(응시) 요건
공인 노무사	일반임기제 (6급 상당)	<p>■ 「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분야 등에서 노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p>
특수 취업지원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p>■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직업상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p>1. 취업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기관 등) 협의체 네트워크 활동 경력이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p>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자격(응시) 요건
		2.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 업무(취업지원관,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 도제지원관, 중기청 맞춤형지원인력 등)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체 인사, 회계 업무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장애인(학생) 취업 관련 경력자 * 관련경력 : 직업상담, 취업지원상담,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 업무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3 보수 및 복무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1차 연도는 채용구분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13」의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 2차 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13」에 하한액이 없는 9급(마급)은 상한액의 60%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연봉액	비고
공인노무사	일반임기제 6급 상당	57,708,000원	
특수취업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28,705,950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4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3층)
다. 접수기간 : 2026. 11. 5.(목) ~ 11. 11.(수) [5일 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금요일은 17:30까지 접수)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발송 전에 반드시 담당자(041-640-8025)에게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 ※ 우편접수자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 “일반임기제공무원(예: 노무사) 채용서류 재증” 명기>

바. 응시수수료

- 납부금액 : 일반임기제 6급(노무사) 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특수취업지원관) 5,000원
- 납부방법 :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후 입금확인서(금융기관별 이체결과 조회)를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계좌번호 : 430-01-000251(금융기관 : 농협, 예금주 : 충남교육청)
- ※ 입금자명: 응시자 본인 성명(반드시 입금자와 응시자가 일치하여야 함)

사.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응시원서 수정 및 취소 불가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의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5가지)

-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의 개수가 같을 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임

-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26.11.5.(목) 09:00 ~ 2026.11.11.(수) 18:00	서류전형	-	-	2026.11.18.(수)
(12:00~13:00 제외, 18:00 이후 접수 불가)	면접시험	2026.11.18.(수)	2026.11.26.(목)	2026.12.3.(목)

- 가.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나. 시험단계별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cne.go.kr>) ‘고시 / 공고’ 란을 통해 안내하며, 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음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기재 ○ 응시수수료 : 일반입기제 6급 7,000원 / 시간선택제입기제 마급 5,000원 ※ 응시수수료를 입금계좌에 입금후 입금확인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필수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필수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⑤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협회에서 발행 	필수
⑥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별지 제5호 서식】사용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리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재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경력사항 등재 여부 꼭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제출 	필수
⑧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필수) 	필수
⑩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필수
⑪ 위임장 1부 (별지 제9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응시원서 제출 시 작성 	해당자
⑫ 응시수수료 입금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 (입금자, 입금계좌명 등 입금 확인용) 	필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 미제출, 입증 내용 미비 등에 의한 경력·자격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을 포함하여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는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자.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 640-8025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공인노무사)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공인노무사	일반임기제(6급 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직원 노동 사건 처리 ○ 교육공무직원 소송 수행 ○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노동법령 및 취업규칙 해석, 질의회신 ○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공인노무사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 교육공무직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노사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

응시자격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분야 등에서 노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p> </div>
---------------	-----------	---

(특수취업지원관)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특수취업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주요 업무	취업지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우수기업 발굴·실사 및 관리 ○ 실습처 및 위업처 개발, 업무협약, 기관 연계 일자리 사업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우수기업 현장실습.취업 연계 업무협약 및 채용정보 관리 ○ 장애학생 직무지도, 실습생 및 취업생 추수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취업지원 관련 업무 지원
----------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현장실습 참여기업 및 우수 취업처 발굴 매칭 등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 등
------	--

응시 자격요건	취업지원관	<p>◆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직업상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기관 등) 협의체 네트워크 활동 경력이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 업무(취업지원관, 중기청 맞춤형지원인력, 교사 등)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체 인사, 회계 업무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p>※ 장애인(학생) 취업 관련 경력자 우대</p>
------------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번호	성명

(아래 순서대로 편철)

- | | |
|--------------------------------|--|
| 1. 응시원서 | ☐ 제출 ☐ 미제출 |
| 2. 이력서 | ☐ 제출 ☐ 미제출 |
| 3.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
| 5. 관련 자격증 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 6. 관련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
|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 제출 ☐ 미제출 |
|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이용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 11. 위 임 장(해당자만) | ☐ 제출 ☐ 미제출 |
| 12. 응시수수료 입금확인서(이체결과 조회) | ☐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 가.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나. 응시직급(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분야)을 기재**
 - 일반임기제 6급 (공인노무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특수취업지원관)
 - 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마.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응시수수료 면제>

아래 각 호의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명	
----------	--	----------	--	----	--

☐ 응시자격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학위 요건

* 해당자는 반드시 작성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최종학력	학사 이상 학위 취득시 기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서 명 (자필)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서 명 (자필)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경력증명서

주소	(휴대전화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관련 경력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 (상근여부)	비고
	근무기간	근무월수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근() 비상근() (일 _시간, 주 _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근() 비상근() (일 _시간, 주 _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근() 비상근() (일 _시간, 주 _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근() 비상근() (일 _시간, 주 _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근() 비상근() (일 _시간, 주 _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근() 비상근() (일 _시간, 주 _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직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①
전화번호	

※ 담당업무 내용과 근무형태(상근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상근이란? 주5일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

※ 위 증명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최종 확인 후 발급자가 기재하여야 함
(본인 서명란을 제외한 나머지는 응시자가 기재 불가)

※ 위 증명서를 허위 등으로 발급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 경력 등 자료검증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관련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도 본 동의서로 갈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본인의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이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 발휘

2026. . .

동의인 :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 . .

동의인 :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입 장

1.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 경쟁임용시험과 관련한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